

OIML

1. 개요

<p>■ 정의</p>	<p>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 (국제법정계량기구)</p>
<p>■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량기의 사용상 야기되는 행정상, 기술적 문제점을 국제적으로 해결하고, 법정계량에 관한 일반원칙 결정으로 국제적 계량체계의 통일을 목적으로 설립 - 이 시스템은 제시된 측정기구 형식이 OIML 국제권고안에 관련된 요구 사항에 일치한다는 사실을 제조자가 시험결과 보고서로 확인하게 하고, OIML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p>■ 적용국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mber Stat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BANIA, ALGERIA, AUSTRALIA, AUSTRIA, BELARUS, BELGIUM, BULGARIA, CAMEROON, CANADA, CHINA, CROATIA, CUB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HUNGARY, INDIA, INDONESIA, IRAN, IRELAND, ISRAEL, JAPAN, KAZAKHSTAN, KOREA (D.P.R.), KOREA (R.), MACEDONIA (The Former Yugoslav Republi, MONACO, MOROC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AKISTAN, POLAND, PORTUGAL, RUSSIAN FEDERATION, SAUDI ARABIA, SERBIA AND MONTENEGRO, SLOVAKIA, SLOVENIA,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WEDEN, SWITZERLAND, TANZANIA, TUNISIA,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VIET NAM -Corresponding memb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NIN, BURKINA FASO, CHINESE TAIPEI, FIJI, JORDAN, LITHUANIA, MALTA, SYRIAN ARAB REPUBLIC, UKRAINE, ZAMBIA

<p>■ 인증마크</p>	
<p>■ 주관기관</p>	<p>- OIML Secretariat (www.oiml.org) : The Bureau International de Métrologie Légale (BIML) : International Bureau of Legal Metrology : 국제법정계량사무국</p>
<p>■ 대상품목</p>	<p>- 계량기구류 등</p>
<p>■ 적용규격</p>	<p>- OIML</p>
<p>■ 기타</p>	<p>- OIML 인증서는 자발적인 토대위에 국가간 계량 종사자에게 상호 인정되어지고, 시험결과보고서의 인정으로, 인증시스템은 제조자와 계량 당국자에 대한 형식승인 절차를 간단하게 하고, 신청과 시험절차의 이중 비용을 줄일 수 있다.</p>

2. 국제권고 및 국제문서

OIML은 국제권고 및 국제문서를 발간하여 법정 계량의 국제 규격을 통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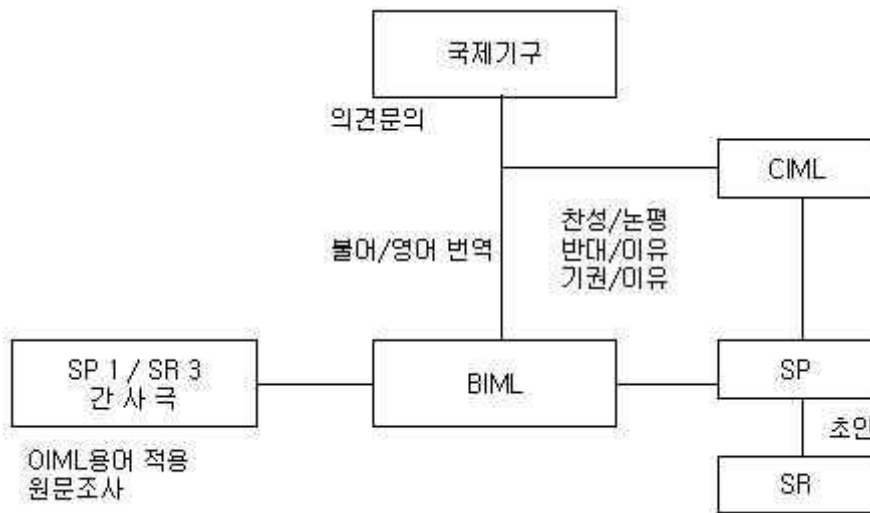
가. 국제권고(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 RI)

- 법정계량에 관한 국가 규정의 모델.
- 국내 규격이나 법에 채용할 도의적 의무.
- 매 4년주기로 작성되는 작업계획에 따라 개발.
- 발간 후 5년 경과되면 개정 필요성 검토.
- 현재 총 98개 규격 발간.
- 강제 규정 표현 shell, 추천 성격의 규정 should 또는 it is advised.
- 국제흐름을 적용으로 기술적인 검사, 교정, 시험방법 수록.
- 해당 분야의 규격 검토와 적용 필요.

- CIML(국제법정계량위원회)의 의견 투표로 채택.

나. 국제문서(International Documents : DI)

- 제도적 조화를 목적으로 발간.
- 법정 계량의 주제를 다루는 일련의 지침 및 정보.
- BIML(국제법정계량사무국) 또는 개발위원회에서 작성 가능.(채택은 CIML)



3. OIML 인증제도 (OIML Certificate System for Measuring Instruments)

가. 목적

- OIML 권고 규격에 일치함을 증명.
- 수출, 입국가 상호간의 인증으로 측정기기 검사 업무의 촉진과 통일

나. 적용 범위

(제25차 CIML 회의결과 회원국이 발급 가능한 국제권고)

- RI. 1 : 원통형 분동 (M2급 1g - 10 kg)
- RI. 2 : 육면체 분동 (M2급 5 - 50 kg)
- RI. 20 : 정밀분동 (E1, E2, F1, F2, M1급 1mg - 50 kg)
- RI. 76 : 비자동 저울
- RI. 97 : 기압계
- RI. 98 : 고정밀 선표준

다. 인증서 취득절차

자국이 OIML의 회원국일 경우

- 신청 : 자국의 CIML 회원이나 다른 회원국의 CIML 회원
- 형식시험 : CIML 회원이나 인증서 발행기관에 의해 지정된 시험기관
- 인증서 발행
- 인증서 등록 : BIML에 등록



- 접수거부의 경우
 - : 시험장비 또는 시험실이 없는 경우
 - : 서류 미비시
 - : 국제권고 규격의 적용범위 이외의 측정기 사용시
- 고려사항
 - : 신청시 검토시 문서 및 추가 필요사항 요구
 - : 접수가능 여부 통보(불가시는 사유통보)
 - : 시험에 필요한 샘플 수량 통보(RI에 따름)
 - : RI에 분류되지 않은 경우 CIML위원과 신청인의 협의결정

라. 시험기관 구비조건

- ISO/IEC 25 : 시험연구소의 기술자격에 대한 일반원칙
- ISO/IEC 38 : 시험기관 지정에 대한 일반원칙

마. 인증서의 사용

- 제시된 형식이 인증받은 형식임을 입증
- 동일형식의 검정에 사용된 기기가 인증받은 것을 입증

바. 제약조건

- 제도의 독립적 성격 : CIML의 회원이나 인증서 발행당국은 유일한 판정관이라는 여건하에 인증신청을 거부 가능.
- 인증서와 성적서의 활용 : 인증서와 시험성적서는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 인증서의 범위 : 인증서는 시험을 위해 제공된 형식의 견본에 대해서만 적용
- 복수신청 불가 : 한 개의 형식에 대해 CIML의 한 회원 이상에 신청해서는 않된다.

사. 비용

- 신청관련 및 시험비용 지불
- 인증서 취득시 BIML에 등록비 지불

아. 분쟁해결

- 인증서 소유자가 제도의 규칙위반 : 인증서 가치상실, BIML 등록제외